

부모의 권리: 가족을 위한 Early Start 안내서 (2026년 개정판)

이 문서에는 관련 법률과 규정의 인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법률 및 규정의 인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CFR은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을 의미합니다.
- GC는 Early Start를 규율하는 캘리포니아주 정부법(Government Code)을 의미합니다.
- CCR은 캘리포니아주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을 의미합니다.

Early Start에서 부모로서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해당 지역 센터나 지역 교육기관(LEA)에 문의해 주십시오.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INFORMED CONSENT)

여러분의 자녀가 Early Start에서 검사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전에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Informed Consent)'라고 합니다. [34 CFR 303.7, 34 CFR 303.420]

- 여러분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303.7]
- 여러분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 모든 검사 또는 평가. [34 CFR 303.420(a), 17 CCR 52162(a)]
 - Early Start 서비스의 시작. [34 CFR 303.420(a), 17 CCR 52162(a)]
 -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 [34 CFR 303.414, 17 CCR 52162(B), 17 CCR 52169]
 - 여러분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보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 의료보험을 사용하는 것. [17 CCR 52162(d)]
- 여러분은 언제든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하여 검사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3.7(c), 34 CFR 303.420(b), 17 CCR 52162(c)]

비밀보장 및 기록 열람권 (CONFIDENTIALITY AND ACCESS TO RECORDS)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에 대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직접 지원하는 사람만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3.29, 17 CCR 52160(a)]

- 여러분은 자녀의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303.405]
- 여러분은 요청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자녀의 기록 사본 또는 기록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CCR 52164(b)]
- 프로그램에 자녀의 기록에 있는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7 CCR 52168]
- 프로그램이 기록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프로그램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7 CCR 52168(c)]
-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가족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비공개로 유지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34 CFR 303.404, 34 CFR 303.420, 17 CCR 52162, 17 CCR 52165, 17 CCR 52169]

평가 및 사정 (EVALUATION & ASSESSMENT)

검사(또는 평가 또는 사정이라고도 함)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여러분의 자녀가 Early Start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GC 95014, 17 CCR 52022]

-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권리에 대해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34 CFR 303.421, GC 95020(c), 17 CCR 52161]
- 어떠한 검사든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4 CFR 303.420, 17 CCR 52162]
- 여러분은 검사 과정과 자격 요건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303.7, 34 CFR 303.321, 34 CFR 303.420, GC 95020, 17 CCR 52040(d), 17 CCR 52082, 17 CCR 52084]
- 평가는 Early Start에 의뢰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34 CFR 303.310, 17 CCR 52086(a)]

- 여러분은 평가 결과의 서면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303.310, 17 CCR 52086(a)]
- 검사는:
 1. 가능한 경우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34 CFR 303.321(a)(6), 17 CCR 52084(d)(4)]
 2.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34 CFR 303.321(a)(4), 17 CCR 52082(g)]
 3.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실시해야 합니다. [34 CFR 303.321, 17 CCR 52082, 17 CCR 52084]
 4. 팀이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자격 여부는 단 하나의 검사 결과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34 CFR 303.321, 17 CCR 52082]
 5.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팀은 모든 발달 영역(사고, 운동, 말하기, 이해력, 자조기술 및 사회정서적 기술)을 평가합니다. [GC 95014, 17 CCR 52022]
- 검사는 가정, 공원, 어린이집과 같은 영유아가 평소 시간을 보내며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17 CCR 52082(j), 17 CCR 52084(e)]
- 여러분은 가족의 자원, 필요 및 우려 사항에 관한 면담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3.321, 17 CCR 52084, 17 CCR 52106]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

여러분의 자녀가 Early Start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전문가 팀은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자녀와 가족의 우려 사항, 목표 및 제공될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계획서입니다. [17 CCR 52100]

- 첫 번째 IFSP 회의는 자녀가 Early Start에 의뢰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34 CFR 303.20, 34 CFR 303.342, GC 95020(b), 17 CCR 52102]
- IFSP는 6개월마다 검토되어야 하며, 최소 1년에 한 번은 갱신되어야 합니다. [34 CFR 303.342, 17 CCR 52102]

부모를 위한 IFSP 회의:

- 여러분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자신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IFSP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303.342, 17 CCR 52102]
- 여러분은 회의가 열리기 전에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34 CFR 303.342, 17 CCR 52102]
- 여러분은 가족이나 권익옹호인을 포함하여 원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3.343, 17 CCR 52104]

IFSP 문서와 관련하여, 부모로서 여러분은:

-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IFSP 사본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4 CFR 303.25, 34 CFR 303.409, 17 CCR 52102]
- 계획에 포함된 각 서비스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일부 서비스에는 동의하고, 다른 서비스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다른 서비스를 받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4 CFR 303.342, 34 CFR 303.420, 17 CCR 52102]

- 서비스는 자녀의 “자연스러운 환경”(예: 집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4 CFR 303.13, 34 CFR 303.344, 17 CCR 52106]
- 프로그램은 자녀의 자격, 검사 또는 서비스 변경을 제안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서면 통지에는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려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34 CFR 303.421, 17 CCR 52161]

조정 회의, 적법절차 심리 및 주정부 민원 제기

자녀의 자격 여부, 검 또는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은 조정회의, 적법절차 심리 및 주 정부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Early Start 프로그램은 이러한 선택 사항에 대해 여러분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34 CFR 303.432, 17 CCR 52170]

조정회의 (MEDIATION)

조정회의는 여러분과 Early Start 프로그램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3자(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회의입니다. 여러분은 분쟁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조정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적법절차 심리나 주정부 민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언제든지 조정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3.431, 17 CCR 52173]

- 여러분은 자신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조정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3.431, 17 CCR 52172]
- 조정회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않는 경우, 조정회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3.431, 17 CCR 52173]
- 조정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비밀이 보장되며, 이후 심리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34 CFR 303.431, 17 CCR 52173(j)]
- 회의에 다른 사람이나 권익옹호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17 CCR 52173(h)]
-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됩니다. [34 CFR 303.431, 17 CCR 52173(i)]

적법절차 심리 (DUE PROCESS HEARING)

이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법적 심리 절차입니다. [34 CFR 303.430, 17 CCR 52172]

- 자녀의 자격이나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법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7 CCR 52172(a)]
- 적법절차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러분과 프로그램이 변경에 합의하거나 자녀가 3세가 되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는 IFSP에 따른 서비스를 계속 받습니다. [34 CFR 303.209, 17 CCR 52172(g)]
- 최종 결정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4 CFR 303.437(b), 17 CCR 52172(e)]

주정부 민원 제기 (STATE COMPLAINT)

프로그램이 주법이나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거나, 자격 또는 서비스 거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발달장애서비스국(DDS)에 공식적인 서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7 CCR 52170]

- 민원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4 CFR 303.434, 17 CCR 52170]
- 민원에는 여러분의 연락처 정보 [17 CCR 52170(g)], 아동의 성명과 주소 [34 CFR 303.434], 지역센터, 지역 교육기관(LEA)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성명 [17 CCR 52170(g)],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34 CFR 303.434]를 포함해야 합니다.
- 민원을 제기하는 기관에도 민원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34 CFR 303.434, 17 CCR 52170(g)]
- DDS는 조사를 실시하고 60일 이내에 여러분에게 최종 서면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34 CFR 303.433, 17 CCR 52171(a)]
- DDS가 해당 기관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 조치를 명령합니다. 시정 조치에는 해당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여러분이 부담한 서비스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7 CCR 52171]

민원 절차 진행 중 부모의 권리:

- 여러분은 서비스 코디네이터나 권익옹호 단체(예: 주 발달장애위원회(State Council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나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 단체(Disability Rights California))로부터 민원 작성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CCR 52170]
- 자녀의 정보는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17 CCR 52169]
- 여러분은 DDS가 조사하는 동안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3.433, 17 CCR 52171(a)]
- 여러분은 DDS가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서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34 CFR 303.433, 17 CCR 52171(a)]
- 또한 기관이 적법절차 심리의 최종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은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303.433, 17 CCR 52171(e)]

조정회의 또는 적법절차 심리 요청서는 다음 방법으로 보내주십시오.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Attention: Early Start Intervention Section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4231
전화: (916) 263-0654
팩스: (916) 376-6318

서명한 민원은 다음 방법으로 보내주십시오.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Attention: Community Appeals and Resolutions Branch
1215 O Street, MS 8-20
Sacramento, CA 95814
전화: (833) 538-3723
팩스: (916) 654-3641
이메일: appeals@dds.ca.gov

부모의 권리와 관련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arly Start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Early Start Baby Line (800-515-BABY (800-515-2229)) 또는 earlystart@dds.ca.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